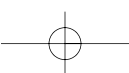


LCD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 공 급 안 내 |



□ 발코니 확장금액

구 분	주 택 형 (타입)							
	112.147A(112㎡A)	110.771A(110㎡A-1)	112.147B(112㎡B)	111.815C(111㎡C)	111.815E(111㎡C-1)	112.247D(112㎡D)	114.924P(114㎡P)	113.600P(113㎡P-1)
면 적 (㎡)	26.310	25.377	23.368	20.205	20.205	28.445	35.653	25.413
금 액 (천원)	1층	15,726	14,293	12,468	12,185	12,087	15,518	-
	2층	14,956	13,375	11,677	11,488	11,387	14,661	-
	기준층	14,956	13,375	11,677	11,488	11,387	14,661	-
	최상층	17,042	-	13,538	14,832	-	17,799	16,942
								14,283

- * 파주당동 자연&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됩니다. 단, 6블록 604동 주택형 111.815F (111㎡C-2) ①호 라인(101호부터 2001호까지 총 20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공급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가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공급계약체결 기간동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또한 상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 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가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재 변경 및 제물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범위

구 분	확 장 전	확 장 후
거 실	타일, 내부페인트	온돌마루, 아트월 연결
주 방	타일, 내부페인트	온돌마루, 주방싱크 확장
드레스룸	드레스장, 타일, 내부페인트	드레스장, 온돌마루, 도배지
침 실 1	타일, 내부페인트	온돌마루, 도배지
침 실 2	타일, 내부페인트	온돌마루, 도배지
침 실 3	타일, 내부페인트	온돌마루, 도배지
발코니사시	없 음	확장실(이중창+22mm복층유리) / 비확장실(단창)

□ 기본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품목)

- 관련근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 상가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당첨된 동·호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준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기본 선택 품 목	상 세 품 목	비 고
문	문틀 및 문짝	
바 닥	바닥재, 걸레받이 등	
벽	벽지	
천 장	천장지, 반자동림 등	
욕 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주 방	벽타일, 주방TV,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쿠파트 포함)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 단, 상가 기본선택품목은 개별선택이 아닌 일괄 선택사항임

- 상가 주택은 공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주택형(타입)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가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회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중도금에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가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음
- 상가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된 재(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주택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일로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에서 2008. 8. 21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의거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가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가 공급금액에 포함됨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세대별 계약면적 중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전실, AD, PD, 벽체공용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경로당, 경비실, 기계실 등 별도의 면적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특별공급(배정세대수 : 112㎡A 18세대, 112㎡B 18세대, 111㎡C 19세대, 112㎡D 18세대) : 블록별 공급세대수는 “청약자격별 공급세대수” 참조
-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월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추천한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해당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송부한 공문으로 대체)
 -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월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대신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1통 제출
- 특별공급 신청자는 노후모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노후모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노후모양 우선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 (2) 3자녀 특별공급(배정세대수 : 112㎡A 5세대, 112㎡B 5세대, 111㎡C 6세대, 112㎡D 5세대) : 블록별 공급세대수는 “청약자격별 공급세대수” 참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할 제한 기간내에 있는자는 제외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량의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의 2007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 공급함
- * 단, 3자녀 특별공급 모집에 청약접수를 하신 분 중 동·호수 추천대상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첨 하오니 신청접수 하신 후 추천대상 여부를 경기 도시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신청접수 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변동내역 표시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에 대한 상가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가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신청서는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노후모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노후모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노후모양 우선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 우선순위 배점표 - 신청시 배점표에 자발적성 및 점수 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점 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2명 이상	10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3) 노후모양 우선공급 : 블록별 공급세대수는 “청약자격별 공급세대수” 참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청약자(1순위)
- 우선공급 신청 초과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역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 후(주민등록상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

(5) 공 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09.26)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가 주택의 당첨재(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주민등록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불가함)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6)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 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및 장소
특별공급	-	•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1)" 참조	-	2008.10.01	-	-
3자녀 특별공급	-	•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2)" 참조	수도권	2008.10.01	• 접수장소 : 경기도시공사 건본주택 • 시 간 : 10:00~14:00	• 당첨자 발표 장소 : 경기도시공사 건본주택 • 동·호수 추첨 및 발표 일시 : 2008.10.01(16:00~)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 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따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 택자이어야 함) ※ 우선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불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의 당첨사실이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파주시 / 수도권	2008.10.06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저축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저축 가입자 www.apl2you.com • 접수시간 : 08:30~18:00	• 당첨자 발표 - 일시 : 2008.10.15 - 장소 : 건본주택 및 2008.10.15일경 경기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가 장 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 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 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 순위 청약불가(단, 2순위로 청약 가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 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 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 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파주시 / 수도권	2008.10.07	• 인터넷 청약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30~18:00	• 당첨자 발표 - 일시 : 2008.10.15 - 장소 : 건본주택 및 2008.10.15일경 경기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가 장 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 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한 분) •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파주시 / 수도권	2008.10.08	-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 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해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파주시 / 수도권	2008.10.09	• 국민은행 인터넷 청약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30~18:00	-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방법

- 특별공급 :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율령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접수일(2008.10.01)에 접수장소(경기도시공사 건본주택)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장애인 및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은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한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표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3자녀 특별공급 :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접수일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접수하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제·2·3순위 : 각 주택형태별 총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되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를 접수함
- 각 주택형태 일반공급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며,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순위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방식 또한 이하 같으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청약자격별 공급세대수

구분	블록	주택형(타입)	공 급 세 대 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	
			특 별 공 급			일반특별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2블록		112,285A(112㎡A)	2	1	-	10	15	142	170			
		112,284B(112㎡B)	2	1	-	10	2	18	33			
		111,953C(111㎡C)	2	1	1	11	15	137	167			
		111,953F(111㎡C-2)	-	-	-	-	1	16	17			
		112,384D(112㎡D)	1	1	-	10	-	7	19			
		115,062P(115㎡P)	-	-	-	-	-	5	5			
		소 계	7	4	1	41	33	325	411			
국민 주택		112,147A(112㎡A)	1	1	-	8	6	58	74			
		110,771A(110㎡A-1)	-	-	-	-	1	18	19			
		112,147B(112㎡B)	1	1	-	8	4	44	58			
		111,815C(111㎡C)	1	1	-	8	6	55	71			
		111,815E(111㎡C-1)	-	-	-	-	3	32	35			
		111,815F(111㎡C-2)	-	-	-	-	2	18	20			
		112,247D(112㎡D)	1	1	1	8	2	27	40			
		114,924P(114㎡P)	-	-	-	-	-	2	2			
		113,600P(113㎡P-1)	-	-	-	-	-	1	1			
		소 계	4	4	1	32	24	255	320			
합 계	11	8	2	73	57	580	731					

※ 상가 일반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주택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자격 입력(기재) 요령

1.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자께서는 청약 신청 이전에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자격 기재요령

- 거주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 군 단위의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
- 거주개시일 : 상가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의 전입일자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예 시) ① 총 세대주 인정기간(5년), 무주택기간(3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3년 ②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9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6년
※ 무주택세대주와 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부양가족수 : 청약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동일하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함

- 3. 사업주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청약자격이 상이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당첨취소,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금지 및 당첨자관리 등 불이익을 받음
- 4.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접수은행 및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3)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 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대상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인터넷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 청약자측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청약자측 가입자
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측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제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제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접속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대상자가 청구 접수시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 : 청약자측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비치) 청약자측 통장(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정(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탁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탁자의 인감도장 - 청탁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탁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의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등은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을 참조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청약접수은행 및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 주 택 형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가능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저가일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청구접수 대상자에 한함)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10.16) 이후 평일 09:30~16:3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신청한 국민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사본 제출),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 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본인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탁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청탁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 청탁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단, 인터넷청약 및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선유지구), 월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해당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추천한 자중 해당일자에 경기도 시공사 건보주택에서 신청·접수한 분에 한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추천인이 추천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3자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시공사 건보주택에서 신청·접수한 분 중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추천인이 추천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자측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별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일반공급 제1,2순위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 지역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파주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제외)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건보주택에 별도 공고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순서 결정방법 : 청약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순서를 먼저 추첨한 후, 추첨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동·호수를 추첨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08.10.21 ~ 2008.10.23 (3일간, 09:3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시공사 건보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으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저가일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및 공급계약 체결 관련 각서(계약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처리일 기준, 기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무주택세대주,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 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 당첨사실에 따른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권 박탈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재사용은 불가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자격(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청자 포함) 및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재사용은 불가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재사용은 불가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변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단기간 마을 명칭, 아파트축복의 자연& 로고부착 및 동 번호는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색채심의위원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 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일 : 2010년 12월중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단원세대 내부에 대해서는 입주개시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주택법」 제38조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5-2블록 】

구 분		총 액	구 분		총 액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7,433,131	공 사 비	철근콘크리트공사	12,690,248	공 사 비	위생기공공사	722,238
	기간이자	1,044,288		용접공사	-		승강기계공사	745,242
	필요적경비	-		조적공사	803,674		난방설비공사	479,553
	그밖의 비용	-		미장공사	1,508,161		가스설비공사	278,434
	계	28,477,419		단열공사	374,600		자동차제어설비공사	349,686
	토공사	263,600		방수·방습공사	468,519		특수설비공사	882,980
	흙막이공사	207,753		목공사	1,273,660	전기	2,186,154	
	비탈면보호공사	-		기공공사	1,753,383	정보통신	2,617,123	
	옹벽공사	-		금속공사	870,492	소방설비	1,829,118	
	석축공사	316,419		지붕 및 홀통공사	15,109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1,748,107
우·오수공사	200,047	창호공사	1,495,617	이윤	753,322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278,342	계	46,310,592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895,656	설계비	1,783,533			
도로포장공사	386,022	돌공사	917,777	감리비	431,27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471,110	일반분양시설경비	441,414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290,193	부담금 및 부담금	434,188			
조경공사	1,726,299	수장공사	683,947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	주방용구공사	1,411,547	기타사업비성 경비	20,414,231			
공통가설공사	1,249,406	잡공사	355,831	소 계	21,289,833			
가시시설물공사	433,734	금수설비공사	880,064	계	23,504,637			
지정 및 기초공사	672,263	금탕설비공사	-	그밖의 비용	4,562,852			
철골공사	54,164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770,998	합 계	102,855,500			

【 6블록 】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0,585,892	공 사 비	철근콘크리트공사	10,455,904
	기간이자	783,637		옹벽공사	-
	필요적경비	-		조적공사	644,615
	그밖의 비용	-		미장공사	1,163,528
	계	21,369,529		단열공사	295,398
공 사 토 목	토공사	181,805	방수·방습공사	399,378	공 사 비
	흙막이공사	217,866	목공사	992,996	
	비탈면보호공사	-	기구공사	1,320,118	
	옹벽공사	-	금속공사	590,253	
	석축공사	172,736	지붕 및 흡통공사	14,987	
	우·우수공사	161,655	창호공사	1,113,589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99,16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669,125	
	도로포장공사	204,408	돌공사	625,251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368,471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219,890	
	조경공사	1,369,398	수장공사	515,333	
	부대시설공사	-	주방용구공사	1,079,702	
	공동가설공사	891,006	잡공사	288,790	
	가시시설공사	307,037	급수설비공사	698,814	
	지정 및 기초공사	564,073	급탕설비공사	-	
	철골공사	31,569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623,211	
공 사 비	건 축	기 계 설비	공 사 비	위생기구공사	558,419
				승강기계공사	625,019
				난방설비공사	367,322
				가스설비공사	206,678
				자동제어설비공사	277,400
				특수설비공사	739,236
				전기	1,767,427
				정보통신	2,101,006
				소방설비	1,496,502
				일반관리비	1,377,358
				이윤	589,147
				계	36,485,581
				설계비	1,409,050
				감리비	353,351
				일반분양시설경비	347,026
				분담금 및 부담금	344,937
				보상비	-
기타사업대비용 경비	16,021,515				
소 계	16,713,478				
계	18,475,879				
그밖의 비용	3,544,811				
합 계	79,875,800				

■ 세대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9.26)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해드립니다(신청후 원상복구는 불가함)
 - 무료설치 : 공용욕실구조변경(바닥단차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좌식사위시설 설치) - 원가제공 : 좌식 싱크대
- * 노약자 편의시설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만65세 이상 직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2008.09.26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통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건설기관 : 국민은행, 계좌번호 : 965601-01-328360,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200-01-124711,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대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해당은행 본·지점에 직접 가져서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경기도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일부 중도금 대출가능 범위에 대하여는 대출 가능 대상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자 본인부담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형」란에는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동 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청약자족 1순위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이 있으면 1순위 청약자 격이 제한됩니다. 허위 또는 착오로 과거 5년 이내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로 신청시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청약자족 통장도 재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제외)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와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경기도시공사에서 통보한 날(우편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해당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 아파트의 보존등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개발사업의 공부정리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기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철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상호 정산합니다.
-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자족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시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유사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약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조감도, 전시모형 및 견본주택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규격, 색상, 질감, 수량 등이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는 일부 주거동 등, 위쪽으로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수별로 단지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일조량,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을 참조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의 조경은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조감도와는 일부 다르게 시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하며,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카달로그, 모형 및 이미지 CG 등에 표현된 수목의 위치 및 종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 등 외부표시 내용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사시가 설치되는 외벽에는 단열시공이 되어있지 않으며 입주자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코니 사시를 설치하는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 등으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내에 전시된 연출용 전시품과 가구 및 조명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물로서 실제로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 모형도와 분양홍보물(카달로그 등)에서 보여주는 커뮤니티센터 내부의 비품, 집기, 가구, 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성을 예시한 것이며 실제로는 각 실로 구획된 공간만이 제공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내용을 경기도시공사에 서면(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통보하는 입주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단, 퇴거시 환불함)
- 공급계약자 명의로 대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비용(신용보증료, 대출수수료, 인지도 등)은 공급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경기도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악취, 공해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외곽 및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도로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초등학교는 경기도 파주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임진초등학교(문산읍사무소 인근, 도심지거리 통과 1.1km 이상)로 예정됩니다.
- 마감재는 평형별로 상이하며 견본주택에 없는 5-2블록 112㎡B형의 마감재는 견본주택의 112㎡A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고, 111㎡C-2형, 112㎡D형 및 115㎡P형의 마감재는 견본주택의 111㎡C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6블록 110㎡A-1형과 112㎡B형의 마감재는 견본주택의 112㎡A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고, 111㎡C-1형, 111㎡C-2형, 112㎡D형, 114㎡P형 및 113㎡P-1의 마감재는 견본주택의 111㎡C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 등은 카달로그 및 전시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세대는 가설층고 사항과 다락이 설치되며, 주방 방면에 다락 계단 설치로 인해 평면의 형태나 주방가구의 배치가 일부 달라지며, 기중층 세대에 설치되는 일부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다락은 난방설비가 미시공 됩니다.)
- 부대관리시설(관리사무소) 지하층에 무인택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확장전후의 평면에서 대피공간의 문은 철재방화문으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구조는 벽식구조·기동방식으로 세대내부의 실 구획계획은 옹벽, 조적일부와 건설벽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2블록은 단지 주출입구에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였으며, 분양가 산정 및 단지내 순정시에는 가감속 차로 면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을 고려하여 에어컨설치기를 발코니의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디.
- 이 주택은 발코니 확장용 감안한 개별난방용량이 확보되었습니다.(단, 확장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 타입별 발코니 확장 면적 기준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공급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입구의 복도(전실)는 공용공간으로 각 세대에서 방화문 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으로 별도의 발코니 복면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입주전 동급성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에는 실별 온도조절기도 바뀝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안방에만 설치되고 거실은 슬리브만 설치됩니다. ·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고, 부부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 주방발코니에는 개별보일러,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내 환기시스템은 전열교환방식이며, 급가는 각방과 거실에 설치되고, 배기는 드레스실과 거실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의 주방에는 견본주택에는 설치되지 않는 가스배관이 규정상 노출이 되도록 되어 노출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 내부 벽체 중 112㎡A형, 110㎡A-1형, 111㎡C형, 111㎡C-1형, 111㎡C-2형, 112㎡D형은 2개소가 가변형벽체구조로 거실-침실3, 침실2-침실3 사이이며, 112㎡B형은 1개소가 가변형벽체구조로 거실-침실 사이이며, 115㎡P형, 114㎡P형, 113㎡P-1형은 가변형벽체가 없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지지 않은 오·우수용 선출통이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락에서도 청문을 이용하여 출입을 할 수가 없으며,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나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블록 604동 인근에는 송천탑(C.H.철탑) 3기가 위치해 있으며, 크기와 형태는 견본주택내 단지모형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2블록 인접 블록에는 국민인대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카달로그에 표시된 최상층 다락 출입계단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 시공사는 점자식 계단으로 설치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 등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 내 외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인테리어, 확장, 사시,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도시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 시공사 : 한화건설, 경남기업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9번지 외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방문 고객께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자연& 견본주택(1588-7804)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신청하신 분)
인 터 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2008.10.15 ~ 2008.10.24 (10일간)	2008.10.15 ~ 2008.10.24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 전화번호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눌러 주세요.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8.10.15 ~ 2008.10.24 (10일간)	2008.10.15 ~ 2008.10.24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08.10.15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시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우리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88-7804



Theme Park



5-2블럭 411세대

- 112mA 170세대
- 112mB 33세대
- 111mC 167세대
- 111mC-2 17세대
- 112mD 19세대
- 115mP 5세대

6블럭 320세대

- 112mA 74세대
- 110mA-1 19세대
- 112mB 58세대
- 111mC 71세대
- 111mC-1 35세대
- 111mC-2 20세대
- 112mD 40세대
- 114mP 2세대
- 113mP-1 1세대

창의적으로 설계된 테마형 단지에서 한 차원 높아진 일상과 만납니다!



501동 / 73세대				502동 / 73세대				503동 / 69세대				504동 / 75세대				505동 / 69세대				506동 / 52세대				601동 / 58세대			602동 / 67세대				603동 / 78세대				604동 / 59세대				605동 / 58세대									
115mP / 1세대				115mP / 1세대				115mP / 1세대				115mP / 1세대				115mP / 1세대				115mP / 1세대				2001 2002 2003			114mP / 1세대 2004				2001 113mP-1 / 1세대				2001 2002 2003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4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701	1702	1703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4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601	1602	1603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4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501	1502	1503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4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401	1402	1403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4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301	1302	1303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4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201	1202	1203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4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101	1102	1103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4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1001	1002	1003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4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901	902	903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4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801	802	803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4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701	702	703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4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601	602	603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4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501	502	503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4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4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301	302	303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201	202	203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01	102	103						
112mA (174세대)	111mC-2 (174세대)	111mC (194세대)	112mA (194세대)	112mA (174세대)	111mC (194세대)	111mC (194세대)	112mA (174세대)	112mA (194세대)	111mC (194세대)	111mC (194세대)	112mA (174세대)	112mA (194세대)	111mC (194세대)	111mC (174세대)	112mA (194세대)	111mC (194세대)	111mC (174세대)	112mB (144세대)	112mD (194세대)	112mB (194세대)	112mB (204세대)	112mD (204세대)	112mA (194세대)	111mC (174세대)	111mC (194세대)	111mC-1 (194세대)	112mA (174세대)	112mA (194세대)	111mC (194세대)	111mC-1 (194세대)	112mA (204세대)	111mC-2 (204세대)	111mC (194세대)	110mA-1 (194세대)	112mB (204세대)	112mD (204세대)	112mB (194세대)											